

## 2022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공고(2차)

경기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2022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의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 2022년 경기도 지원사업 변경사항(필독) <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고 기업 선정의 효율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범위반기업에 대한 기업 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2년 1월 7일 “경기도 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고시하여(경기도 고시 제 2022-5003호) 최근 2년 내 범위반기업에 대한 경기도 지원사업을 제한하며 이에 따라 제출서류가 추가되었습니다.

### □ 사업목적

-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구제절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 □ 사업개요

- 사업명 : 2022년 지식재산 보호강화 사업 국내·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2차)
- 사업총괄 : 경기도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벤처기업

○ 지원한도

- 국내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0,000천원 이내
- 국외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환수

○ 신청대상 : 현재 심판·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업기간 내 심판청구 또는 소송 제기하고자 하는 경기도내<sup>1</sup> 중소기업<sup>2</sup>

1.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가 경기도에 소재하여야 함
2.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자격 제한

-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중복지원을 받은 건
- 사업 신청 전 이미 심판·소송이 완료된 건 ※ 심판·소송 진행 중인 건은 지원가능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  
[공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납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 사업 선정 후 과거 범위반사실 확인시 사업 취소, 지원금 반환 및 3년간 도 자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 공모 마감일 기준으로 휴업·폐업 상태인 경우
- 상대방 기업의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단, 기술탈취는 예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선정된 경우

□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분쟁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심판·소송비용 일부 지원

○ 세부 지원내용

구분	사업내용	지원금 한도/건	기업부담금
국내분쟁 지원 (최대 2,000만원)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500만원 이내	30%
	상표등록취소심판	400만원 이내	30%
	지식재산권 심결취소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민·형사소송, 가처분	700만원 이내	30%
국외분쟁 지원 (최대 2,500만원)	국외 심판·소송	2,500만원 이내	30%
※ 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 부담(부가세, 관납료, 성공보수는 지원 제외) ※ 복수 지원 가능하나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이내(국외는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 - 총사업비 2,857만원(100%)=지원금 최대 2,000만원(70%)+기업부담금 857만원(30%이상) ※ 심판청구, 소송제기 예정 또는 진행 중인 경우에도 완료 전이면 지원 가능 ※ 신청기업이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피고)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 ※ 국외 심판·소송의 경우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지원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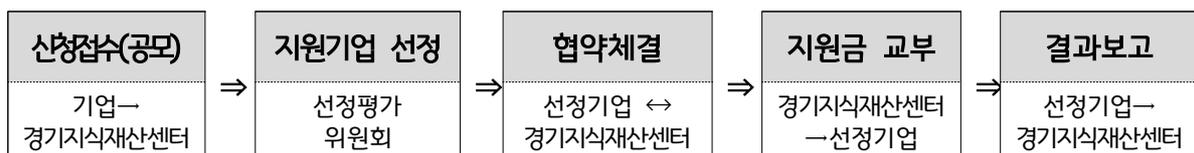
□ 선정평가

- (평가위원 구성) 7인 이상 10인 이내의 평가위원회 구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을 준용
- (평가기준) 사안의 시급성 및 심판·소송의 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결과가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신청 구분	평가지표	배점
심판	해당 심판에서 신청기업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	60
	해당 심판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소송·가처분	해당 소송에서 신청기업이 승소할 가능성	60
	해당 소송의 결과가 신청인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	40

- (가산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된 기업(5점)

□ 추진절차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6. 20.(월) ~ 2022. 7. 8.(금) 18:00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blisstar1@gtp.or.kr)

※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방문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서류(발급처)	비고	
필수	1. 심판·소송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1]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2. 심판·소송 진행계획서	[붙임2]	한글파일 PDF파일 모두 제출	
	3-1.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동의서	[붙임3] [서식1]	직인날인된 PDF파일	
	3-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붙임3] [서식2]	직인날인된 PDF파일	
	3-3. 기업부담금 납부동의서	[붙임3] [서식3]	직인날인된 PDF파일	
	3-4.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서식4]	직인날인된 PDF파일	
	3-5.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붙임3] [서식5]	직인날인된 PDF파일	
	범 위 반 사 실 확 인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① 국세:국세청 홈택스 ② 지방세:민원24	공모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분
		5.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범위반기업(노동) 관련 - 근로기준법 - 산업안전보건법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a href="https://www.open.or.kr">https://www.open.or.kr</a>	* 조회기간 : 2020.6.19~2022.6.20. (공모일 기준 2년) * 청구내용 :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6.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범위반기업(환경) 관련 -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청 홈페이지 정보공개청구	* 조회기간 : 2020.6.19~2022.6.20. (공모일 기준 2년) * 청구내용 : 기업명, 조회기간, 위반여부, 상세위반사항
	7. 엑셀신청서	[붙임4]	엑셀파일 제출	
	8. 심판·소송 관련 비용 견적서 (청구서, 계약서 등)		심판·소송 진행할 대리업체(특허법인, 법무법인 등)의 견적서	
	9.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a href="http://sminfo.mss.go.kr">http://sminfo.mss.go.kr</a>	공모 마감일이 유효기간 이내일 것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본사 소재지가 경기도		
11.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제출		
선택	12. 가산점 증빙서류 (인증기간 확인필수)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공모 마감일이 인증기 간 이내일 것	
	13. 심판·소송 관련 증빙서류	접수증, 심판청구서, 소장, 답변서, 이체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심판·소송 진행 중인 경우 제출	

## □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제출서류를 임의로 추가·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및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하는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부정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금액의 5배 이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정행위 기업 및 대표 명단을 공표합니다.

## □ 문의처

- 전화 : 031-776-4891 / FAX. : 031-776-4892
- 이메일 : [blisstar1@gtp.or.kr](mailto:blisstar1@gtp.or.kr)